#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 사 보 고 서

2026. 4.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년 3월 31일

2. 회부일자 : 2026년 4월 7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국회(임시회)

□ 제1차위원회(2026. 4. 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

□ 제2차위원회(2026. 4. 8.)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계속)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회부

□ 제1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2026. 4. 9.)

· 상정,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보고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17건) 종합조정

□ 제2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2026. 4. 10.)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17건) 종합조정(계속)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수정 의결

□ 제3차위원회(2026. 4. 10.)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 수정 의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 종 우)**

❑ 존경하는 진성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함.

❑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증액하고, 그 소요 재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마련하고자 함.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논의하는 추경 기금뿐만 아니라 금년도 기금 또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음.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림.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자 : 수석전문위원 이 신 우)**

### 1. 개관

#### 가. 추경안의 주요 내용

❑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외적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26.2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이에 따라 추경안은 ① 고유가 부담 완화, ② 민생 안정,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고유가 부담 완화' 분야는 총 10.1조원 규모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전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5.1조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4.8조원, 에너지 복지를 위해 0.2조원이 투입될 계획임.

'민생 안정' 분야는 총 2.8조원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취약계층 일상 회복을 위해 0.8조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을 위해 1.9조원, 고물가 대응을 위해 0.1조원이 편성되었음.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분야는 총 2.6조원 규모로, 수출기업·산업 지원을 위해 1.1조원, 에너지 및 신산업 전환을 위해 0.8조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0.7조원이 투입될 계획임.

[2026년도 추경안의 주요 내용]

(단위: 조원)

| | | |
|---|---|---|
| 기본방향 | **총 26.2조원** | |
| | ◇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① 고유가 부담 완화, ② 민생 안정,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 | |
| 주요내용 | **1 고유가 부담 완화** | **10.1** |
| | ▸ 전국민 부담 경감(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 5.1 |
| | ▸ 고유가 피해지원금 | 4.8 |
| | ▸ 에너지 복지 | 0.2 |
| | **2 민생 안정** | **2.8** |
| | ▸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 0.8 |
| | ▸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 1.9 |
| | ▸ 고물가 대응 | 0.1 |
| | **3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 **2.6** |
| | ▸ 피해기업·산업 지원 | 1.1 |
| | ▸ 에너지·신산업 전환 | 0.8 |
| | ▸ 공급망 안정화 | 0.7 |
| | **4 지방재정 보강 등** | **9.7** |
| | **5 국채 상환** | **1.0**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3.31.

## 나. 소관별, 회계·기금별 구성

❑ 이번 추경안은 총지출 기준 10개 상임위원회 18개 부처 133개 세부사업으로, 모두 증액 사업으로 구성됨.

소관 부처별로 증액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9조 5,240억원(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252억원, 보통교부세 4조 5,390억원 등)이 증액되어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었고, 다음으로는 기획예산처 5조원(예비비), 교육부 4조 8,109억원(보통교부금 4조 5,772억원 등) 순으로 증액되었음.

[2026년도 추경안의 소관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소관 상임위원회 | 소관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수 | 증액규모 |
|---|---|---|---|---|
| 재정경제 기획위원회 | 재정경제부 | 공공자금관리기금 | 2 | 206,600 |
| | 기획예산처 | 일반회계 | 1 | 5,000,000 |
| | 국세청 | 일반회계 | 1 | 213,364 |
| | 조달청 | 조달특별회계 | 1 | 2,639 |
| 교육위원회 | 교육부 | 일반회계 | 7 | 4,770,637 |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 | 40,300 |
| | | 소계 | 9 | 4,810,937 |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일반회계 | 5 | 64,268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8,700 |
| | | 정보통신진흥기금 | 1 | 20,000 |
| | | 소계 | 7 | 92,968 |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 일반회계 | 6 | 9,524,049 |
|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회계 | 4 | 54,788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 | 13,683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6 | 95,805 |
| | | 관광진흥개발기금 | 6 | 345,410 |
| | | 영화발전기금 | 2 | 74,590 |
| | | 소계 | 20 | 584,276 |

(단위: 개, 백만원)

| 소관 상임위원회 | 소관 부처 | 회계/기금 | 세부사업수 | 증액규모 |
|---|---|---|---|---|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4 | 21,379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70,630 |
| | | 농지관리기금 | 1 | 58,771 |
| | | 축산발전기금 | 1 | 65,000 |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 | 50,000 |
| | | 소계 | 8 | 265,780 |
| | 해양수산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 | 48,408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 | 10,551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2,944 |
| | | 수산발전기금 | 1 | 30,000 |
| | | 소계 | 5 | 91,903 |
| | 산림청 | 일반회계 | 1 | 2,000 |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부 | 일반회계 | 6 | 712,300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 | 21,000 |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5 | 190,833 |
| | | 소계 | 13 | 924,133 |
| | 중소벤처기업부 | 일반회계 | 12 | 771,914 |
|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5 | 720,000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5 | 445,520 |
| | | 소계 | 22 | 1,937,434 |
| | 지식재산처 | 일반회계 | 1 | 9,500 |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일반회계 | 8 | 316,360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9,917 |
| | | 소계 | 9 | 326,277 |
|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 | 100,230 |
| | | 환경개선특별회계 | 2 | 7,500 |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5 | 379,261 |
| | | 기후대응기금 | 3 | 37,530 |
| | | 소계 | 12 | 524,521 |
| | 고용노동부 | 일반회계 | 5 | 386,556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 | 12,000 |
| | | 고용보험기금 | 1 | 18,559 |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1 | 89,944 |
| | | 근로복지진흥기금 | 2 | 31,556 |
| | | 소계 | 10 | 538,615 |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 일반회계 | 4 | 29,474 |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 | 87,708 |
| | | 소계 | 5 | 117,182 |
| **10개 상임위** | **18개 부처** | **합 계** | **133** | **25,172,178** |

자료: 기획예산처

❑ 추경안의 증액 내역을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예산에서 22조 5,036억원, 기금에서 2조 6,685억원이 증액되어 총 25조 1,722억원이 증액됨.

예산 중에서는 일반회계가 21조 8,552억원(교부세·교부금 9조 4,487억원, 예비비 5조원)이 증액되어 가장 크게 증액되었고, 다음으로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16억원(석유비축사업 출자 1,58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89억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6억원) 순으로 증액됨.

기금 중에서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7,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5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었고, 다음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455억원(소상공인지원(융자) 3,2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3,793억원(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205억원) 순으로 증액됨.

[2026년도 추경안의 회계 · 기금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 회계·기금 | | 세부사업수 | 증감규모 | 주요 증액내용 |
|---|---|---|---|---|
| 예산 | 일반회계 | 61 | 21,855,210 | · 예비비 5조원<br>·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252억원<br>· 교부세·교부금 9조 4,487억원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6 | 69,787 | ·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68억원<br>·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8억원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 | 87,708 |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877억원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8 | 301,614 | · 석유비축사업출자 1,584억원<br>· 무공해차 보급사업 900억원 |
| | 환경개선특별회계 | 2 | 7,500 | ·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56억원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9 | 138,874 |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6억원<br>· 산업단지환경조성 140억원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 | 40,300 |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83억원 |

(단위: 개, 백만원)

| 회계·기금 | | 세부사업수 | 증감규모 | 주요 증액내용 |
|---|---|---|---|---|
| | 조달특별회계 | 1 | 2,639 | · 공사 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26억원 |
| | 소 계 | 90 | 22,503,632 | - |
|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 2 | 206,600 | · 국고채이자상환 1,066억원 |
| | 정보통신진흥기금 | 1 | 20,000 | · AI통합바우처 200억원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6 | 95,805 | ·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 500억원<br>·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320억원 |
| | 관광진흥개발기금 | 6 | 345,410 | · 관광산업 융자지원 2,800억원<br>·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306억원 |
| | 영화발전기금 | 2 | 74,590 | · 영화 창제작 지원 385억원 |
| | 농지관리기금 | 1 | 58,771 | · 농지이용관리지원 588억원 |
| | 축산발전기금 | 1 | 65,000 | ·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650억원 |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1 | 50,000 | · 농식품소비기반조성 500억원 |
| | 수산발전기금 | 1 | 30,000 | ·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300억원 |
| |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 5 | 720,000 |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500억원<br>·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700억원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5 | 445,520 | · 소상공인지원(융자) 3,200억원<br>·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603억원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5 | 379,261 |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205억원<br>·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624억원 |
| | 기후대응기금 | 3 | 37,530 | · CCU메가프로젝트(R&D) 224억원 |
| | 고용보험기금 | 1 | 18,559 | · 고용유지지원금 186억원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1 | 89,944 | · 체불청산 지원 융자 899억원 |
| | 근로복지진흥기금 | 2 | 31,556 | · 신용보증대위변제 226억원 |
| | 소 계 | 43 | 2,668,546 | - |
| 합 계 | | 133 | 25,172,178 | - |

자료: 기획예산처

❑ 한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과 함께 총 17개 기금에 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 중에서 「국가재정법」 제70조[1]에 따라 주요사업비(프로그램)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기존계획의 20%(금융성 기금은 30%)를 초과하여 의무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농지관리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개임.

그 밖에 정보통신진흥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수산발전기금·축산발전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기후대응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고용보험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9개 기금은 자체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내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제출되었음.

---

1)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 2. 주요 검토사항

### 가. 추경안의 편성 요건

❑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 환율 상승 및 공급망 교란 등의 대외적 충격이 지속될 경우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경제는 2월 28일 발발한 중동전쟁으로 인해 유가의 급등 및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가와 환율은 물가상승과 실물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먼저, 국제 유가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2월까지는 전반적인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로 2026년 연평균 배럴당 63~64달러 내외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월 말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더 나아가 석유류의 수급 차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026년 이후 3대 국제 원유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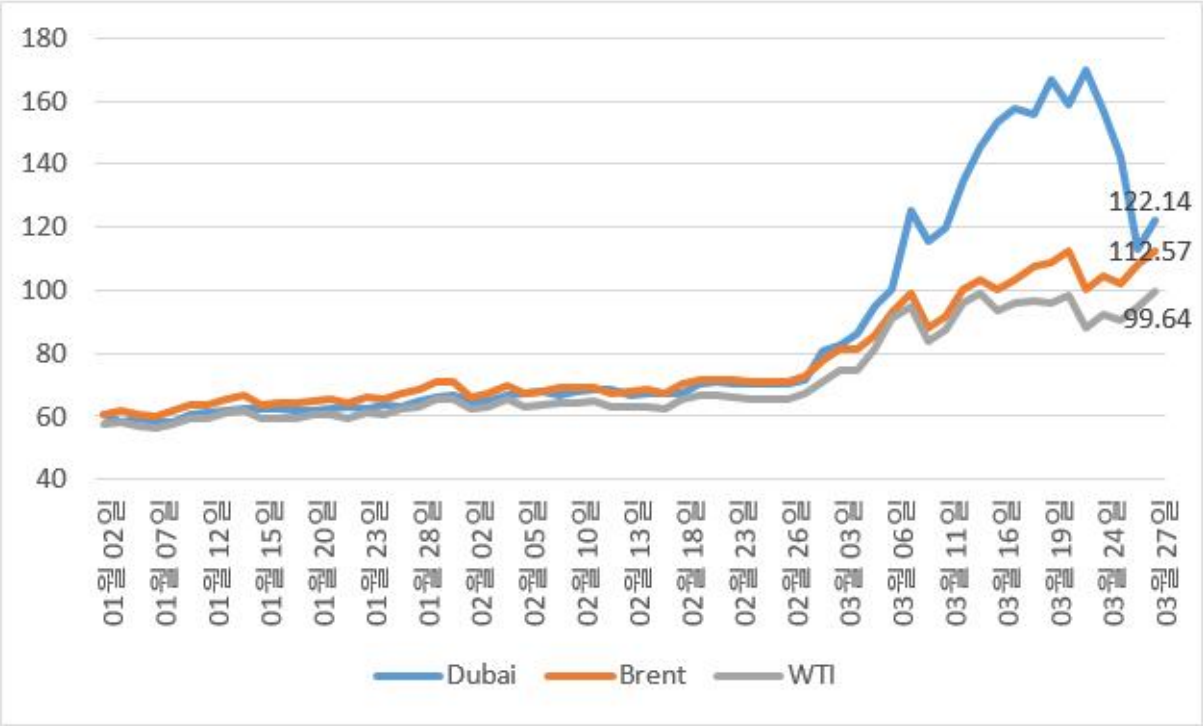


다음으로, 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연초 1,400원대 내외로 추산되던 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환율 상승과 유가 급등이 맞물려 국내 경제 전반에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임.

[2025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행간거래 시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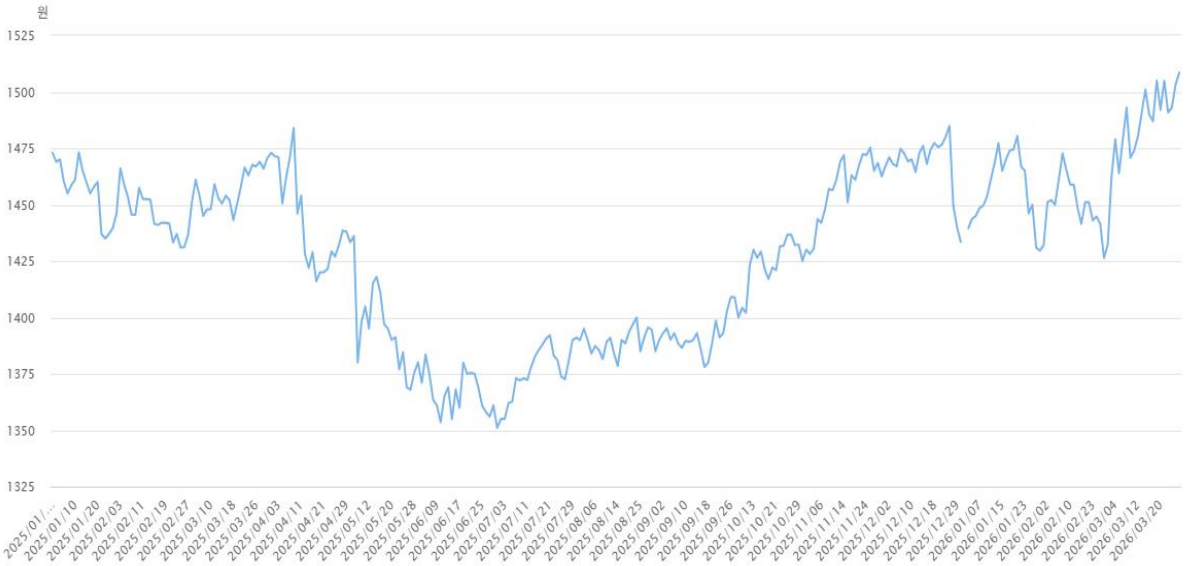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OECD는 최근 중간 경제전망(2026. 3.)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2025. 12.)에서 1.7%로 하향 조정하였고, 물가상승률은 1.8%(2025. 12.)에서 2.7%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2026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내역]

(단위: %, %p)

| 구분 | | 당초(A) | 조정(B) | 조정치(B-A) |
|---|---|---|---|---|
| 국제기구 | OECD | 2.1<br>(2025.12.) | 1.7<br>(2026.3.) | △0.4 |
| | IMF | 1.8<br>(2025.10.) | 1.9<br>(2026.1.) | +0.1 |
| 국내기관 | 한국은행 | 1.8<br>(2025.11.) | 2.0<br>(2026.2.) | +0.2 |
| | KDI | 1.8<br>(2025.11.) | 1.9<br>(2026.2.) | +0.1 |

자료: 각 기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석유류 등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상승, 수출입 물류 및 공급망 교란 등은 그 자체로 대외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민생물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과 석유·화학산업, 물류·운송업 등에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추경안은 전반적으로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등 이번 추경안에 다수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매칭 지방비 적기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방재정 여력 차이 등을 고려하여 다층화된 국비지원율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서울시 70%, 그 밖의 지역은 80%의 국고보조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다층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추경안에 따라 증가하는 매칭 지방비 확보 등 추경 증액분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의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집행 부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가능성과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신속한 민생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 당시 예산 확정일과 2차 지급을 위한 최초 신청일 간 상당한 시차(만 80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기준 산정 등 사전 준비를 보다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은 7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수상팀 선정 및 후속지원 일정을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하고, 사업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은 대체수입 물량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프타 재고 부족 시 배분 우선순위 설정 및 수요 분산 등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존 사업 및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 간에 유사성이 있거나,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므로,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창업패키지' 사업은 이미 일부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지원과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단가 상승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자부담 비율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사업 지원정보 사전 공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추경의 일반적 요건(목적적합성, 보충성, 시급성 등)과 이번 추경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 추경안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나. 재정총량 변동 및 재정건전성

❑ 이번 추경안의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25.4조원이 증가한 700.6조원이며,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25.2조원 증가한 753.1조원임.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 대비 적자 폭이 축소될 전망이며,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1.0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본예산 대비 적자규모가 0.2조원 축소된 △52.5조원(GDP 대비 △1.9%)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GDP 대비 비율은 본예산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됨.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본예산 대비 적자규모가 0.2조원 축소된 △107.6조원(GDP 대비 △3.8%)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GDP 대비 비율은 △3.8%로 0.1%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국가채무는 1,412.8조원(GDP 대비 50.6%)으로 본예산 대비 △1.0조원(△1.0%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정부가 추경안 편성 시 GDP 전망을 수정하고 국고채 원금상환 1조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함.

[2026년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 구분 | 2024년 본예산 | 2025년 | | 2026년 | | 본예산 대비 (B-A) |
|---|---|---|---|---|---|---|
| | | 본예산 | 제2회 추경안 | 본예산(A) | 추경안(B) | |
| ◇ 총수입 | 612.2 | 651.6 | 642.4 | 675.2 | 700.6 | 25.4 |
| (전년대비 증가율, %) | (△2.2) | (6.4) | (4.9) | (3.6) | (7.5) | (3.8) |
| ◇ 총지출 | 656.6 | 673.3 | 703.3 | 727.9 | 753.1 | 25.2 |
| (전년대비 증가율, %) | (2.8) | (2.5) | (7.1) | (8.1) | (11.8) | (3.5) |
| ◇ 통합재정수지 | △44.4 | △21.7 | △60.8 | △52.7 | △52.5 | 0.2 |
| (GDP 대비, %) | (△1.8) | (△0.8) | (△2.3) | (△1.9) | (△1.9) | - |
| ◇ 관리재정수지 | △91.6 | △73.9 | △111.6 | △107.8 | △107.6 | 0.2 |
| (GDP 대비, %) | (△3.6) | (△2.8) | (△4.2) | (△3.9) | (△3.8) | △0.1%p |
| ◇ 국가채무 | 1,195.8 | 1,273.3 | 1,301.9 | 1,413.8 | 1,412.8 | △1.0 |
| (GDP 대비, %) | (47.4) | (48.1) | (49.1) | (51.6) | (50.6) | △1.0%p |

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2025.6.23.)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2026.3.31.)를 기초로 재작성함

❑ 먼저, 이번 추경안은 재정수지와 재정건전성이 소폭 호전되었으나,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나라 재정여건의 위기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 총지출을 증액하고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소폭 호전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 재정건전성 악화를 위협하는 요건이 상존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무지출의 증가는 다른 민생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재량지출의 여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채 순상환은 정부의 항구적인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나 재정 구조개혁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 및 자산

시장의 호조 등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법인세·증권거래세 등의 초과세수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지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다음으로,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국채를 순상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을 유의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하여 2021년 이후 5년 만에 국채를 순상환하는 계획을 포함한 점은, 국가채무의 절대적 규모를 줄이고 최근 금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채 시장에 발행물량 축소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을 보면 각종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고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국고채 발행 시장에서 평균조달금리는 2025년 10월 2.68%에서 2026년 2월 3.40%로 상승하였고, 국고채 유통시장에서도 2025년 8월을 기점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발행시장) 2024년 및 2025.10.~2026.2. 국고채 발행액 및 평균 조달금리]

(단위: 조원, %)

| | | 2024년 | 2025년 | | | | 2026년 | | |
|---|---|---|---|---|---|---|---|---|---|
| | | | | 10월 | 11월 | 12월 | | 1월 | 2월 |
| □ 발행잔액 | | 1,047.1 | 1,159.4 | 1,166.8 | 1,178.9 | 1,159.4 | 1,198.7 | 1,176.8 | 1,198.7 |
| □ 발행액 | | 157.7 | 226.2 | 17.7 | 15.6 | 5.4 | 40.3 | 17.9 | 22.4 |
| **□ 평균 조달금리** | | **3.22** | **2.66** | **2.68** | **3.01** | **3.15** | **3.31** | **3.18** | **3.40** |
| □ 평균 응찰률 | | 321 | 267 | 262 | 274 | 284 | 254 | 259 | 250 |
| 외국인 국고채 | 보유잔액 (증감) | 238.9 (+19.2) | 297.4 (+58.5) | 280.6 (+1.1) | 293.7 (+13.1) | 297.4 (+3.7) | 310.9 (+13.5) | 303.1 (+5.8) | 310.9 (+7.8) |
| | 보유비중 | 22.8 | 25.7 | 24.1 | 24.9 | 25.7 | 26.0 | 25.8 | 26.0 |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3월호, 2026.3.

[(유통시장) 최근 1년간 월평균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

(단위: %)

| 구 분 | 25/03 | 25/04 | 25/05 | 25/06 | 25/07 | 25/08 | 25/09 | 25/10 | 25/11 | 25/12 | 26/01 | 26/02 |
|---|---|---|---|---|---|---|---|---|---|---|---|---|
| 국고채(3년) | 2.590 | 2.395 | 2.331 | 2.441 | 2.465 | 2.427 | 2.464 | 2.601 | 2.880 | 3.010 | 3.044 | 3.167 |
| 국고채(5년) | 2.665 | 2.492 | 2.469 | 2.601 | 2.622 | 2.584 | 2.615 | 2.726 | 3.057 | 3.251 | 3.317 | 3.437 |
| 국고채(10년) | 2.795 | 2.658 | 2.710 | 2.842 | 2.840 | 2.815 | 2.849 | 2.933 | 3.248 | 3.366 | 3.485 | 3.612 |
| 국고채(20년) | 2.688 | 2.600 | 2.678 | 2.826 | 2.835 | 2.838 | 2.844 | 2.904 | 3.245 | 3.340 | 3.461 | 3.638 |
| 국고채(30년) | 2.581 | 2.507 | 2.584 | 2.737 | 2.738 | 2.740 | 2.754 | 2.819 | 3.169 | 3.239 | 3.358 | 3.549 |
| 국고채(50년) | 2.451 | 2.363 | 2.447 | 2.637 | 2.634 | 2.623 | 2.635 | 2.670 | 3.060 | 3.165 | 3.254 | 3.429 |

주) 월평균(영업일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고채 이자비용의 증가는 재정건전성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국고채 유통·발행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재정수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수준이 아니나,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의무지출 구조조정, 조세특례 정비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음.

IMF의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4년 49.82%로 기축통화국인 미국(122.32%), 영국(101.23%), 일본(236.11%)에 비해 낮고 G7(123.98%), EU(82.43%), 선진국(109.05%)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그러나 2017년 대비 2024년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1.81%p로, G7(6.52%p), EU(△0.89%p), 선진국(5.82%p) 대비 높은 상황으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의 증가속도는 주요국 대비 빠른 편에 속함.

[주요 국가의 2017~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단위: %, %p)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17 대비 차이 |
|---|---|---|---|---|---|---|---|---|---|
| **한국** | **38.01** | **37.85** | **39.73** | **45.92** | **47.99** | **49.80** | **50.54** | **49.82** | **11.81** |
| 미국 | 106.37 | 107.63 | 108.75 | 132.51 | 125.01 | 119.10 | 119.84 | 122.32 | 15.95 |
| 영국 | 86.72 | 86.35 | 85.66 | 105.84 | 105.13 | 99.61 | 100.35 | 101.23 | 14.51 |
| 프랑스 | 98.72 | 98.49 | 98.10 | 114.91 | 112.79 | 111.37 | 109.62 | 113.15 | 14.43 |
| 독일 | 63.99 | 60.758 | 58.68 | 68.04 | 67.99 | 64.44 | 62.38 | 63.47 | △0.52 |
| 이탈리아 | 133.74 | 134.20 | 133.90 | 154.38 | 145.81 | 138.35 | 134.64 | 135.33 | 1.59 |
| 스페인 | 101.14 | 99.72 | 97.58 | 119.18 | 115.59 | 109.23 | 105.07 | 101.65 | 0.51 |
| 호주 | 79.06 | 74.59 | 71.01 | 83.18 | 82.40 | 78.38 | 78.51 | 80.79 | 1.73 |
| 캐나다 | 90.94 | 90.78 | 90.21 | 118.07 | 112.62 | 104.21 | 107.71 | 111.30 | 20.36 |
| 중국 | 53.90 | 55.58 | 59.44 | 69.04 | 70.15 | 75.45 | 82.01 | 88.32 | 34.42 |
| 일본 | 231.32 | 232.38 | 236.38 | 258.37 | 253.65 | 248.25 | 240.46 | 236.11 | 4.79 |
| 대만 | 34.46 | 33.83 | 32.61 | 31.96 | 30.09 | 29.48 | 29.04 | 26.35 | △8.11 |
| G7 | 117.46 | 117.28 | 118.22 | 139.68 | 132.41 | 124.60 | 123.12 | 123.98 | 6.52 |
| EU | 83.32 | 81.27 | 79.09 | 91.31 | 88.43 | 83.92 | 81.91 | 82.43 | △0.89 |
| 선진국 (Advanced Economics) | 103.23 | 102.75 | 103.81 | 122.16 | 115.62 | 109.33 | 108.51 | 109.05 | 5.82 |

주)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10.)와 기획재정부,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5.12. 간에 시차가 발생하여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제비교를 위한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 IMF 자료를 그대로 활용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10.),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percent of GDP - Indicator.ID: GGXWDG_NGDP을 재가공하여 작성

향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의 전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24년 49.82%에서 2030년 64.2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030년 예상치를 기준으로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호주(49.36%), 대만(9.84%)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예상됨.

[주요 국가의 2024~2030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전망치]

(단위: %, %p)

|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24 대비 차이 |
|---|---|---|---|---|---|---|---|---|
| **한국** | **49.82** | **53.37** | **56.66** | **58.89** | **60.94** | **62.73** | **64.29** | **14.47** |
| 미국 | 122.32 | 125.05 | 128.75 | 132.69 | 136.64 | 140.13 | 143.39 | 21.07 |
| 영국 | 101.23 | 103.36 | 104.77 | 105.39 | 105.83 | 105.86 | 105.42 | 4.19 |
| 프랑스 | 113.15 | 116.51 | 119.56 | 122.14 | 124.55 | 126.97 | 129.43 | 16.28 |
| 독일 | 63.47 | 64.42 | 66.00 | 67.82 | 69.65 | 71.56 | 73.58 | 10.11 |
| 이탈리아 | 135.33 | 136.84 | 138.30 | 138.48 | 137.86 | 137.31 | 137.01 | 1.68 |
| 스페인 | 101.65 | 100.40 | 98.71 | 96.92 | 95.55 | 94.08 | 92.56 | △9.09 |
| 호주 | 50.72 | 51.04 | 50.73 | 50.51 | 50.16 | 49.76 | 49.36 | △1.36 |
| 캐나다 | 111.30 | 113.94 | 112.95 | 111.80 | 110.70 | 109.73 | 107.89 | △3.41 |
| 중국 | 88.32 | 96.26 | 102.32 | 106.33 | 109.70 | 112.89 | 116.14 | 27.82 |
| 일본 | 236.11 | 229.57 | 226.82 | 224.46 | 222.94 | 222.18 | 222.16 | △13.95 |
| 대만 | 26.35 | 23.42 | 20.87 | 18.17 | 15.44 | 12.65 | 9.84 | △16.51 |
| G7 | 123.98 | 125.69 | 127.96 | 130.41 | 132.91 | 135.07 | 137.17 | 13.19 |
| EU | 82.43 | 83.18 | 84.46 | 85.33 | 86.12 | 86.95 | 87.82 | 5.39 |
| 선진국 (Advanced Economics) | 109.05 | 110.25 | 111.81 | 113.60 | 115.46 | 117.04 | 118.50 | 9.45 |

주)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10.)와 기획재정부,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5.12. 간에 시차가 발생하여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제비교를 위한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 IMF 자료를 그대로 활용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10.),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percent of GDP - Indicator.ID: GGXWDG_NGDP을 재가공하여 작성

따라서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세입여건의 악화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의무지출을 포함한 지출구조조정 및 조세특례 정비 등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 세입경정

❑ 이번 추경안의 국세수입은 415조 4,19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조 1,856억원(6.5%) 증액 편성하였음.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4개 세목이 증액되었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3개 세목이 감액되었음.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본예산 대비 4조 7,971억원(3.6%) 증액한 136조 8,179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용근로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등 고용호조를 이유로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서 기인함.

법인세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 등을 이유로 법인세 신고분과 원천분이 각각 13조 3,148억원, 1조 4,593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아 본예산 대비 14조 7,741억원(17.1%)을 증액하였음.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의 거래대금이 급증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아 본예산 대비 5조 1,868억원(96.5%) 증액한 10조 5,621억원이 편성되었음.

농어촌특별세 또한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 증가로 인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규모가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아 본예산 대비 5조 1,223억원(60.3%) 증액한 13조 6,212억원을 편성하였음.

감액세목을 살펴보면,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및 담배 개별소비세의 부진 등을 반영하여 0.5조원을 감액하였고, 교

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확대 적용을 반영하여 3.4조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부가세(sur-tax)로 본세의 감액경정에 따라 0.8조원 감액하였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정부의 추경안 대비 1.7조원 적은 413.8조원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근로소득세는 추경안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법인세 등 다른 세목은 정부 전망보다 적게 걷힐 것으로 추산하였기 때문임.

[2026년도 국세수입 전망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

(단위: 조원)

| 구분 | 본예산 (A) | 정부 | | 국회예산정책처 | | 차이 (C-B) |
|---|---|---|---|---|---|---|
| | | 추경안 (B) | 본예산 대비 (B-A) | 전망 (C) | 본예산 대비 (C-A) | |
| 국세 | 390.2 | 415.4 | 25.2 | 413.8 | 23.5 | △1.7 |
| 근로소득세 | 68.5 | 73.2 | 4.8 | 74.6 | 6.1 | 1.3 |
| 법인세 | 86.5 | 101.3 | 14.8 | 99.4 | 12.9 | △1.9 |
| 개별소비세 | 9.4 | 8.9 | △0.5 | 8.6 | △0.8 | △0.3 |
| 증권거래세 | 5.4 | 10.6 | 5.2 | 9.1 | 3.7 | △1.5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6.4 | 13.0 | △3.4 | 12.7 | △3.7 | △0.3 |
| 교육세 | 6.4 | 5.6 | △0.8 | 5.6 | △0.8 | △0.0 |
| 농어촌특별세 | 8.5 | 13.6 | 5.1 | 13.3 | 4.8 | △0.3 |

주)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이번 세입경정은 다소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에 대해 정부의 세수추계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세입 증액경정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추경안보다 1.7조원 적은 413.8조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이번 추경안은 2000년대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2020년

제1회(3.5.), 2009년(3.30.) 다음으로 가장 이른 시점(3.31.)에 제출된 것임.

[2000년대 이후 세입경정이 포함된 추경안의 세입경정 내역]

(단위: 조원)

| 연도[1] | 추경안 제출일 | 본예산[2] | 추경안 증감[3] | 국회확정 증감 | 주요 증감액 사유 |
|---|---|---|---|---|---|
| 2003 | 6.5. | 113.6 | 1.0 | 1.3 | 예산대비 세수전망 초과<br>* 법인세 +2.6, 증권거래세 △0.8, 부가세 △0.4 |
| 2005 | 9.30. | 130.6 | △4.2 | △3.5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br>* 모든 세목 |
| 2009 | 3.30. | 175.4 | △11.2 | △11.4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수부족<br>* 소득세 △3.7, 법인세 △5.7, 부가세 △2.1, 교통세 +1.1, 관세 △1.1 |
| 2013 | 4.18. | 216.4 | △12.0 | △6.0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br>* 소득세 △0.7, 법인세 △2.1, 부가세 △2.3, 관세 △0.7, 기타 △0.2 |
| 2015 | 7.6. | 221.1 | △5.6 | △5.4 |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br>* 모든 세목 |
| 2016 | 7.26. | 222.9 | 9.8 | 9.8 |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br>* 소득세 +2.5, 법인세 +5.4, 부가세 +1.7, 교통세 +0.7, 관세 △0.4 |
| 2017 | 6.7. | 242.3 | 8.8 | 8.8 | 일자리 대책 추진<br>* 소득세 +3.9, 법인세 +3.3, 부가세 +1.0, 상증세 +0.6 |
| 2020 제1회 | 3.5. | 292.0 | △3.2 | △0.8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br>* 법인세 △0.1, 부가세 △0.2, 개소세 △0.4, 교육세 △0.1 |
| 2020 제3회 | 6.4. | 291.2 | △11.4 | △11.4 | 코로나19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세수부족<br>* 법인세 △5.8, 부가세 △4.1, 관세 △1.1, 개소세 △0.4, 증권거래세 +0.6, 과년도수입 △0.5, 기타 △0.1 |
| 2021 제2회 | 7.2. | 282.7 | 31.5 | 31.5 |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우발세수<br>* 양도세 +8.6, 배당소득 +1.1, 법인세 +12.2, 부가세 +2.7, 상속세 +2.3, 증여세 +0.5, 증권거래세 +3.2, 농특세 +0.9 |
| 2022 제2회 | 5.13. | 343.4 | 53.3 | 53.3 | 법인실적 개선, 고용·임금상승, 부동산가격 상승<br>* 양도세 +8.6, 배당소득 +1.1, 법인세 +12.2, 부가세 +2.7, 상속세 +2.3, 증여세 +0.5, 증권거래세 +3.2, 농특세 +0.9 |

(단위: 조원)

| 연도[1] | 추경안 제출일 | 본예산[2] | 추경안 증감[3] | 국회확정 증감 | 주요 증감액 사유 |
|---|---|---|---|---|---|
| 2025 제2회 | 6.23. | 382.4 | △10.3 | - | 법인실적 증가세 둔화 및 작년 12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위축,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br>* 법인세 △4.7, 부가세 △4.3, 상속세 +0.9, 교통세 △1.1, 개소세 △0.9, 교육세 △0.3 |

주 1) 국세수입 경정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에만 작성하였음
2)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1회만 제출된 경우 본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수 제출된 경우 직전의 추경예산을 의미함
3) 2009년과 2013년 추경은 세입경정 규모에 세외수입(2009년: +0.2조원, 2013년: △6.0조원)이 포함됨

자료: 재정경제부

2021~2025년 본예산 대비 세수실적 오차는 각각 21.7%, 15.3%, △14.1%, △8.4%, △8.5%로 큰 폭으로 발생한 바 있고, 이번 추경안과 같이 올해 국세수입이 수납되는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 6.5% 세수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세수추계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016~2026년 국세수입 예·결산 및 오차율]

(단위: 조원, %)

| 구분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예산 | 본예산(A) | 222.9 | 242.3 | 268.1 | 294.8 | 292.0 | 282.7 | 343.4 | 400.5 | 367.3 | 382.4 | 390.2 |
| | 추경(B) | 232.7 | 251.1 | 268.1 | 294.8 | 279.7 | 314.3 | 396.6 | 341.4 | 337.7 | 372.1 | 415.4 |
| 결산(C) | | 242.6 | 265.4 | 293.6 | 293.5 | 285.5 | 344.1 | 395.9 | 344.1 | 336.5 | 373.9 | - |
| 차이 | 본예산 대비(C-A) | 19.6 | 23.1 | 25.4 | △1.3 | △6.5 | 61.3 | 52.6 | △56.4 | △30.8 | △8.5 | - |
| | 추경 대비(C-B) | 9.8 | 14.3 | 25.4 | △1.3 | 5.8 | 29.8 | △0.7 | 2.7 | △1.2 | 1.8 | - |
| 오차율 | 본예산 대비[(C-A)/A] | 8.8 | 9.5 | 9.5 | △0.5 | △2.2 | 21.7 | 15.3 | △14.1 | △8.4 | 2.2 | - |
| | 추경 대비[(C-B)/B] | 4.2 | 5.7 | 9.5 | △0.5 | 2.1 | 9.5 | △0.2 | 0.8 | △0.4 | 0.5 | - |

주) 2023년, 2024년 추경예산은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재가공

정부가 회계연도가 개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세입예산을 증액 경정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당시 세입 전망이 실제 경제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국가 재정 운용의 기초가 되는 본예산 세입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이번 추경안은 반도체 산업 경기 호황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법인세를 대폭 증액하였으나,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거나 유가·환율 상승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는 경우 증액경정에 비해 세수실적이 부진할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세입

증액경정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정부는 2026년 2월 개정된「국가재정법」제55조의2[2]에 따른 9월 당해 연도 세입예산 재추계를 통해 세목별 추계 정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국가재정법」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 라. 추경안의 재원

❑ 정부는 총 26.2조원의 필요재원을 초과세수 25.2조원(96.1%), 기금 여유자금 등 1.0조원(3.9%)으로 충당할 계획임.

[2026년도 추경안의 재원]

(단위: 백만원, %)

| 항 목 | 재원 규모 | 비 중 |
|---|---|---|
| 초과세수 | 25,185,632 | 96.1 |
| 기금 여유자금 등 | 1,014,077 | 3.9 |
| 합계 | 26,199,709 | 100.0 |

자료: 기획예산처, 국고채원금상환 포함 규모

이번 추경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한 기금은 11개임.

이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기후대응기금·고용보험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은 기금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해당 기금 사업을 증액하는데 활용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기금 여유자금을 타 기금 전출에 활용하였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에 활용하였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의 재원 중 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규모 | 비고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20,000 | 해당 기금 사업 증액 |
| 영화발전기금 | 20,000 |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550,000 | |
| 기후대응기금 | 41,064 | |
| 고용보험기금 | 18,559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89,944 | |
| 근로복지진흥기금 | 31,556 | |
| 국민체육진흥기금 | 231,805 | 타 기금 전출 |
| 정보통신진흥기금 | 3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
| 관광진흥개발기금 | 3,660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5,689 | |
| 합계 | 1,012,577 | - |

자료: 기획예산처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미 2월에 확정된 한국은행 잉여금과 가결산 등으로 파악 가능한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을 이번 추경안의 재원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는 세입추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음.

먼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며[3], 최종 잔여분인 잉여금을 통상 2월 말 결산 완료 후 국고에 납입함.[4]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025년 241억원)

4) 「한국은행법」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 편성 시점에서 해당 잉여금은 이미 수납이 완료되어 국고에 편입된 기확정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았음.

참고로, 2025년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 15조 3,275억원으로, 당기순이익 중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한국은행 잉여금은 10조 7,060억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7조 2,691억원 대비 3조 4,369억원 초과 수납되었음.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의 처리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당기순이익 |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정부납입금 (한은잉여금) |
|---|---|---|---|---|
| 2018년 | 32,137 | 9,641 | 354 | 22,142 |
| 2019년 | 53,131 | 15,939 | 339 | 36,853 |
| 2020년 | 73,659 | 22,098 | 341 | 51,220 |
| 2021년 | 78,638 | 23,592 | 266 | 54,781 |
| 2022년 | 25,452 | 7,636 | 270 | 17,546 |
| 2023년 | 13,622 | 4,087 | 315 | 9,221 |
| 2024년 | 78,189 | 23,457 | 241 | 54,491 |
| 2025년 | 153,275 | 45,982 | 232 | 107,060 |

주) 임의적립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임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 정부 출자기업의 배당금 또한 「국유재산법」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5까지의 규정 등에 따라 2~3월 중 배당협의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 규모를 확정하는데,[5] 정부출자기관의 2025년 정부배당

---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조 (이익금처분) ① 한국은행은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배당절차 : 배당기초자료 제출(1월) → 배당협의체 운영(2월) → 배당 확정(3~4월) → 수납(4~5

은 2조 2,987억원으로 전년(2조 1,322억원) 대비 1,665억원 증가한 바 있음.

추경안 제출 시점에서는 결산 실적에 기반한 실배당액이 확정되었거나 가결산을 통해 실질적인 배당 수익 추산이 가능한 상태이고, 2026년 실제 수납액과 본예산 편성 시점의 추산치 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따라서 이미 법령에 따라 수납이 완료되었거나 배당 규모가 구체적으로 추산 가능한 한은 잉여금 및 정부출자수입은 재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세입추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 또한, 이번 추경안의 재원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이 마감되어 확정된 세계잉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가용재원을 소극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음.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집행잔액 등을 바탕으로 산출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약 0.1조원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약 3.1조원임.[6)]

[2025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조원)

| 구 분 | 총세입 (A) | 총세출 (B) | 결산상 잉여금 (A-B) | 이월 (C) | 세계잉여금 (A-B-C) |
|---|---|---|---|---|---|
| 합 계 | 597.9 | 591.0 | 6.9 | 3.7 | 3.2 |
| 일반회계 | 493.2 | 491.0 | 2.2 | 2.1 | 0.1 |
| 특별회계 | 104.7 | 100.0 | 4.7 | 1.6 | 3.1 |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발표”, 2026.2.10.

월) → 배당실적 국회 보고 및 공표(5월)

6)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발표”, 2026.2.10.

재정경제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0.1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라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3.1조원)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자체 세입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총세입·총세출 마감을 통해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828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가용재원을 소극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보임.[7][8]

## 마. 예비비

❑ 이번 추경안의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5조원(125.0%) 증액된 9조원이 편성되었는바, 목적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5조원(156.3%)이 증액된 8조 2,000억원, 일반예비비는 본예산과 동일한 8,00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확정예산 기준으로 목적예비비의 지출대상은 재해대책비, 인

---

7) 「국가재정법」제90조를 고려할 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① 2025년은 국세수입 경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를 본예산대로 지급하여 지방교부세는 정산할 것이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일부 정산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③ 국채 및 차입금 등 상환으로 활용한 이후 나머지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활용할 수 있음. 참고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이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28억원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함.

8) 「국가재정법」제90조제7항에서는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은 4월 초중순(예: 2025.4.11.)에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는 추경안 제출 시점으로는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주체에게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신속히 통합작성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3.31.) 시점에 세계잉여금 사용·출연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법정 지출의 부족액,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국제부담금, 긴급구호, 정부조직개편인데, 이번 추경안에서는 목적예비비의 사용목적에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추가하고, 목적예비비를 5조원 증액 편성하였음.

[예산총칙 상 목적예비비 금액 및 사용목적 비교]

| 2026년도 본예산 예산총칙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
|---|---|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2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8,2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이에 대해 정부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보강하고,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수반되는 손실보상 소요액 등 총 5조원의 예산을 전액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는바, 예측 가능한 소요액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세출사업에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조치로 보임.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을 맞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로 인한 정유사의 영업 손실을 보전해줄 정책적 필요성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재원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세출사업으로 신설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은 현행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는데,[9]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목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는 정책 결정을 내렸다면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유발되는 민간 부문의 손실보상 소요는 해당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정적 결과로 봐야 할 것임.

비록 향후 국제 유가의 변동폭과 환율의 추이,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최종적인 손실보상 규모를 추경안 편성 단계에서 정확히 확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10] 5조원이라는 대규

9)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0)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13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장관 고시)을 제정하여 손실보전의 대략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음. 해당 고시에서는 석유정제업자가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석유정제업자별 원가 등을 포함하여 손실액을 산정한 후 공인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법률·석유시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석유정제업자가 제시하는 손실액을 검증하고 이를

모의 예산을 세부적인 산출 근거 및 구체적인 지출 계획의 제시 없이 예비비 형태로 전액 편성하는 것은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11)]

따라서 사전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기초 소요액은 산업통상부의 세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대외 변수에 의한 불가피한 초과 변동분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한정하여 제한적인 수준의 목적예비비로 대처하는 것이 예산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목적예비비의 지출대상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포함시켜 현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에 대해서도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한국수출입은행 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추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설명자료에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 보강,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음.[12)]

---

검증하여 적정 손실액 및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시 제정에도 불구하고, 5조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의 핵심이 되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산정 기준을 부처 간 내부 협의로 결정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보전액 산정 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제도적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11) 향후 타 부처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신규 재정 지출소요가 발생할 때에도 세부적인 산출내역 작성을 생략하고 예비비 제도를 활용하려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12) 기획예산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자료", 2026.3.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2025~2026년 매년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에 대해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

예비비는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재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안보품목의 확보, 도입 및 공급을 위한 구매자금 융·출자 등에 대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예비비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3. 유형별 검토

### 가. 고유가 부담 완화

❑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본예산 대비 10.1조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전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5.1조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원, 에너지 복지를 위해 0.2조원을 투입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총 8개 부처 14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예비비 5조원과,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252억원, K-패스 환급률의 한시적 확대 등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해 877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소비진작 등 당초 목표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의견과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

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 당시 예산 확정일과 2차 지급을 위한 최초 신청일 간 상당한 시차(만 80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기준 산정 등 사전 준비를 보다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일각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의 공급측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의 추경예산이 집행될 경우 총수요를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13]이 있는 반면, '마이너스 GDP 갭' 상황에서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14]도 존재하므로, 추경예산 집행 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피해 취약계층 보호 및 부담 완화 효과가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신속히 이행하고, 보조금 지급주기 단축, 이용촉진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의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은 유류비 부담과 보조금 지급 시점 간 시차로 인해 정책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주기 단축 또는 선지급·정산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추경안에서 등유·LPG 사용 가구의 냉·난방 등에 필요한 구입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연례적으

13) 서울경제, "3월 CPI촉각... 고환율·추경에 2분기 3%대 갈 수도", 2026.3.30.

14) 조선일보, "한은 "추경 '물가 자극' 제한적일 것…성장률 영향은 규모에 달려"", 2026.3.15.

로 발급액에 비해 실제 사용액이 저조하므로 그 원인분석 및 절차 간소화 등 이용촉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부는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의 부정수급 증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사후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집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는 사업으로의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의 '어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은 이미 일반유보다 면세유 가격이 낮아 사용량 부풀리기 등 부정수급 등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으로 면세유와 일반유의 실질적인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세유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점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집행 중 예산을 변경하여 홍보 등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 재원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별 재정력을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매칭 지방비가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비용 지원' 사업은 추경안에 따른 정부 분담액 877억 800만원에 대응하여 지방비(969억 200만원)가 적기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추경 증액분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현행 보조율 구조 상의 지자체별 지방비 부담액이 재정력에 비례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다층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 민생 안정

❑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본예산 대비 2.8조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을 위해 0.8조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을 위해 1.9조원, 고물가 대응을 위해 0.1조원이 투입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13개 부처 60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3,200억원,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의료급여 지급 2,8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를 위해 2,5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일부 사업은 제한된 일정,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조속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은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시제품 제작 및 홍보까지의 단계적 지원이 7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상팀 선정 및 후속지원 일정을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하고, 사업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은 과거 지원실적을 고려할 때 발급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해 쿠폰이 실제 공연 관람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여 정책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매처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동 홍보계획을 마련하는 등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이번 추경안의 증액사업 중에는 2025년에 추경안을 통해 사업을 증액하였으나 해당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불용이 발생한 사업이 있는바,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는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 시 증액 편성하였으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2026년 3월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사업은 2025년에도 본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경을 통하여 부족 재원 228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에 따르면 자치단체 불용액이 67억 1,100만원으로 추경 증액분의 29.3%에 달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분할 교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부는 일부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및 방식에 대한 면밀한 설계를 통해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은 동일인이 여러 예매처를 통해 쿠폰을 중복 발급받을 수 있어 정책 수혜가 편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매처 간 발급 이력의 통합관리, 1인당 지원 한도의 합리적 설정 등 정책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유통 경로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지

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업체의 가격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물가 안정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임.

❑ 넷째,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필요한 예산 규모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사업은 단기 실적을 기반으로 연간 소요를 추산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정책환경의 변화, 계절적 요인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 추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융자사업에서의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계획액과 실집행액 간 괴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등 일부 융자사업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설정에 관한 근거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 수요를 반영한 적정 사업규모를 바탕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 정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본예산 대비 2.6조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피해 수출기업·산업 지원을 위해 1.1조원, 에너지·신산업 전환을 위해 0.8조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0.7조원을 투입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총 10개 부처 47개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 등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4,7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동 상황으로 인해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800억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5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련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2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는 중동전쟁 피해 기업의 비용 지원을 위해 각 부처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바, 바우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급기관의 서비스 품질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중동전쟁 피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긴급지원바우처'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은 중동전쟁 피해 기업들을 위해 'Fast-Track'을 신설하거나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이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 물류 지원 한도를 부여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동전쟁 피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중동전쟁 피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바우처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수요기업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공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는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약 7.1조원 규모의 보험·보증 등 정책금융을 확대할 예정인바, 보증 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증 심사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은 보증 공급 규모가 이번 추경안에서 확대되었으나, 매년 보증사고율이 증가하고 구상권 회수율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보증 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산업통상부의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은 보험·보증 공급 규모가 이번 추경안에서 확대되었으나, 중동 상황과 무관한 기업이 단순 금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을 활용하는 경우 제한된 보증한도 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은 기업이 배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 심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나, 수요가 불명확하고 집행까지 필요한 사전절차 등이 소요

되는 것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화물차 보급(지자체보조)'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보다 많은 대수가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가정형 태양광' 사업은 2016~2018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던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3년간 보급 개소 합계인 7만 8,912개소에 2030년 베란다 태양광 보급 목표를 고려하여 산출되었는바, 편성 물량이 연내에 전량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청년콘텐츠 분야의 투자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투자 수요 또한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민간자금이 해당 분야의 실질적 투자로 원활히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사업은 추경을 통해 연도 중 단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공고부터 협약체결까지의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기획·평가·관리가 필요해 보임.

넷째,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나프타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공정한 석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적시에 자원의 수입 및 비축이 이루어지고 석유의 가격과 품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은 나프타 국내 재고 고갈 후 대체 공급선으로부터의 수입 재개까지의 시차로 인해 수급 격차가 심화되는 기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대체수입 물량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프타 재고 부족 시 배분 우선순위 설정 및 수요 분산 등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은 2025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손으로 비축유 구입을 위한 출자예산 일부가 미교부(이월)되어 한국석유공사가 단기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선례를 고려하여, 추경으로 편성된 출자예산이 적시에 교부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의 '석유품질관리지원사업' 및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은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공급부족 및 비규제 유종의 과도한 인상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가격과 품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석유제품 시장 전반으로 감독 및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심사보고자 : 이 소 영 위원)**

### 1. 심사경과

❑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열 일곱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음.

❑ 우리 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안건 및 부대의견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속한 민생회복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2. 심사보고 요지

❑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5조 1,722억원의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통해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하여, 최종적인 추경안의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4억원 순감되었음.

❑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각각 500억원과 400억원을 감액하였음.

둘째, 벤처펀드의 미투자자금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을 1,100억원 감액하고,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을 250억원 감액하였음.

셋째,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은 본예산 규모 및 다른 직업능력 개발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018억원 감액하였음.

❑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을 신설하는 한편, 농림어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12억원 증액하고, 무기질 비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73억원을 증액하였음.

둘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해 1,027억원을 증액하였음.

셋째,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

해 2,049억원을 증액하였음.

넷째, 도서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연안여객항로 단기 적자 지원 사업을 68억원 신설하였고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예산을 23억원 증액하였음.

❑ 다음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편성된 목적예비비를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등 총 열 네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영화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열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음.

그리고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후대응기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일곱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음.

##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용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별첨)과 동일

## Ⅵ. 토론요지

생 략

## Ⅶ. 수정안의 요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별첨)과 동일

## Ⅷ. 심사결과

수정 의결

## Ⅸ. 새 비목설치 및 상임위 감액사업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결과

「국회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사업에 대하여 1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음.

※ 별첨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 별첨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2026. 4. 10.

# <예산 및 기금 조정규모>

## ◇ 예산총계

(단위: 백만원)

| | 증액 | 감액 | 증감 |
|---|---|---|---|
| □ 세 입 | 346,550 | △217,978 | 128,572 |
| □ 세 출 | 1,112,353 | △983,781 | 128,572 |

주) 총계 기준

## ◇ 예산순계

(단위: 백만원)

| | 증액 | 감액 | 증감 |
|---|---|---|---|
| □ 세 입 | 76,983 | - | 76,983 |
| □ 세 출 | 738,091 | △661,108 | 76,983 |

주) 회계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기준

## ◇ 기금운용규모

(단위: 백만원)

| | 증액 | 감액 | 증감 |
|---|---|---|---|
| □ 수 입 | 84,154 | △269,694 | △185,540 |
| □ 지 출 | 215,119 | △400,659 | △185,540 |

주) 총계 기준

## ◇ 총수입

(단위: 백만원)

| | 증액 | 감액 | 증감 |
|---|---|---|---|
| ▣ 예 산 | - | - | - |
| ▣ 기 금 | - | - | - |
| 합 계 | - | - | - |

주) 총수입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금융성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 내부거래 - 보전거래

## ◇ 총지출

(단위: 백만원)

| | 증액 | 감액 | 증감 |
|---|---|---|---|
| ▣ 예 산 | 653,937 | △551,108 | 102,829 |
| ▣ 기 금 | 136,857 | △243,093 | △106,236 |
| 합 계 | 790,794 | △794,201 | △3,407 |

주) 총지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금융성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 내부거래 - 보전거래

## ◇ 분야별 총지출 조정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 조정내역 | | |
|---|---|---|---|
| | 증액 | 감액 | 증감 |
| 1. 보건·복지·고용 | 22,079 | △127,704 | △105,625 |
| 2. 교 육 | 1,571 | △6,000 | △4,429 |
| 3. 문화·체육·관광 | 31,784 | △153,192 | △121,408 |
| 4. 환 경 | 73,818 | △7,500 | 66,318 |
| 5. R&D | - | △46,700 | △46,700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387,541 | △435,438 | △47,897 |
| 7. SOC | 113,815 | - | 113,815 |
| 8. 농림·수산·식품 | 154,449 | - | 154,449 |
| 9. 국 방 | - | - | - |
| 10. 외교·통일 | 1,678 | - | 1,678 |
| 11. 공공질서·안전 | 745 | - | 745 |
| 12. 일반·지방행정 | 2,603 | △33,667 | △31,064 |
| 합 계(총지출) | 790,794 | △794,201 | △3,407 |

##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규모 총괄

(단위: 백만원)

| 기금명 | 2026년도 | | | 조정 | 수정안 |
|---|---|---|---|---|---|
| | 현계획 | 증감 | 변경안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328,483,724 | △402,221 | 328,081,503 | △21,014 | 328,060,489 |
| 정보통신진흥기금 | 1,120,720 | 20,000 | 1,140,720 | △10,150 | 1,130,570 |
| 국민체육진흥기금 | 3,459,040 | 130,395 | 3,589,435 | △9,280 | 3,580,155 |
| 문화예술진흥기금 | 632,549 | 75,805 | 708,354 | △23,490 | 684,864 |
| 관광진흥개발기금 | 1,839,942 | 345,410 | 2,185,352 | △85,295 | 2,100,057 |
| 영화발전기금 | 169,556 | 54,590 | 224,146 | △9,000 | 215,146 |
| 농지관리기금 | 2,780,209 | 58,771 | 2,838,980 | - | 2,838,980 |
| 축산발전기금 | 1,121,527 | 65,000 | 1,186,527 | 50,000 | 1,236,527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3,048,050 | 50,000 | 3,098,050 | - | 3,098,050 |
| 수산발전기금 | 1,160,036 | 30,000 | 1,190,036 | 33,000 | 1,223,036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11,512,909 | 720,000 | 12,232,909 | △110,000 | 12,122,909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6,709,165 | 450,393 | 7,159,558 | - | 7,159,558 |
| 전력산업기반기금 | 4,513,656 | △5,689 | 4,507,967 | △311 | 4,507,656 |
| 기후대응기금 | 2,905,685 | - | 2,905,685 | - | 2,905,685 |
| 고용보험기금 | 27,610,808 | - | 27,610,808 | - | 27,610,808 |
| 임금채권보장기금 | 896,862 | 209,313 | 1,106,175 | - | 1,106,175 |
| 근로복지진흥기금 | 541,905 | 22,581 | 564,486 | - | 564,486 |
| 합 계 | 398,506,343 | 1,824,348 | 400,330,691 | △185,540 | 400,145,151 |

주) 총계 기준

## ◇ 기금수입계획변경안 수정규모

(단위: 백만원)

| 기금명 | 2026년도 | | | 조정 | 수정안 |
|---|---|---|---|---|---|
| | 현계획 | 증감 | 변경안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784,917 | 1,500 | 786,417 | - | 786,417 |
| 정보통신진흥기금 | 933,974 | - | 933,974 | - | 933,974 |
| 국민체육진흥기금 | 2,456,422 | - | 2,456,422 | - | 2,456,422 |
| 문화예술진흥기금 | 93,623 | - | 93,623 | - | 93,623 |
| 관광진흥개발기금 | 1,390,170 | - | 1,390,170 | - | 1,390,170 |
| 영화발전기금 | 36,727 | - | 36,727 | - | 36,727 |
| 농지관리기금 | 1,426,472 | - | 1,426,472 | - | 1,426,472 |
| 축산발전기금 | 726,879 | - | 726,879 | - | 726,879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2,451,761 | - | 2,451,761 | - | 2,451,761 |
| 수산발전기금 | 700,396 | - | 700,396 | - | 700,396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5,452,876 | - | 5,452,876 | - | 5,452,876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4,059,391 | - | 4,059,391 | - | 4,059,391 |
| 전력산업기반기금 | 3,116,435 | - | 3,116,435 | - | 3,116,435 |
| 기후대응기금 | 831,969 | - | 831,969 | - | 831,969 |
| 고용보험기금 | 21,840,282 | - | 21,840,282 | - | 21,840,282 |
| 임금채권보장기금 | 713,982 | 209,313 | 923,295 | - | 923,295 |
| 근로복지진흥기금 | 181,736 | - | 181,736 | - | 181,736 |
| 합 계 | 47,198,012 | 210,813 | 47,408,825 | - | 47,408,825 |

주) 총수입 기준

## ◇ 기금지출계획변경안 수정규모

(단위: 백만원)

| 기금명 | 2026년도 | | | 조정 | 수정안 |
|---|---|---|---|---|---|
| | 현계획 | 증감 | 변경안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29,275,047 | 206,600 | 29,481,647 | - | 29,481,647 |
| 정보통신진흥기금 | 736,502 | 20,000 | 756,502 | △10,000 | 746,502 |
| 국민체육진흥기금 | 1,709,852 | - | 1,709,852 | 23,210 | 1,733,062 |
| 문화예술진흥기금 | 539,352 | 95,805 | 635,157 | △23,490 | 611,667 |
| 관광진흥개발기금 | 1,198,242 | 345,410 | 1,543,652 | △85,295 | 1,458,357 |
| 영화발전기금 | 101,506 | 74,590 | 176,096 | △9,000 | 167,096 |
| 농지관리기금 | 2,661,181 | 58,771 | 2,719,952 | - | 2,719,952 |
| 축산발전기금 | 871,485 | 65,000 | 936,485 | 50,000 | 986,485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2,531,555 | 50,000 | 2,581,555 | - | 2,581,555 |
| 수산발전기금 | 1,147,476 | 30,000 | 1,177,476 | 33,000 | 1,210,476 |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6,212,909 | 720,000 | 6,932,909 | △110,000 | 6,822,909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5,537,638 | 445,520 | 5,983,158 | - | 5,983,158 |
| 전력산업기반기금 | 2,688,980 | 379,261 | 3,068,241 | 25,339 | 3,093,580 |
| 기후대응기금 | 2,592,016 | 37,530 | 2,629,546 | - | 2,629,546 |
| 고용보험기금 | 18,477,675 | 18,559 | 18,496,234 | - | 18,496,234 |
| 임금채권보장기금 | 849,167 | 89,944 | 939,111 | - | 939,111 |
| 근로복지진흥기금 | 199,457 | 31,556 | 231,013 | - | 231,013 |
| 합 계 | 77,330,040 | 2,668,546 | 79,998,586 | △106,236 | 79,892,350 |

주) 총지출 기준

# Ⅰ.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1. 수정규모 총괄

(단위: 백만원)

| 기금명 | 2026년도 | | | 조정 | 수정안 |
|---|---|---|---|---|---|
| | 현계획 | 증감 | 변경안 | | |
| 수산발전기금 | 1,160,036 | 30,000 | 1,190,036 | 33,000 | 1,223,036 |

주) 총계 기준

## 2. 기금수입계획변경안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 소 관 | 목명 | 2026년도 | | | 조정 | 비고 |
|---|---|---|---|---|---|---|
| | | 현계획 | 증감 | 변경안 | | |
| 해양수산부 | 특별회계전입금 | 128,792 | 30,000 | 158,792 | 33,000 | |
| **합계(총계)** | | | | | **33,000** | |
| **총수입** | | | | | - | |

## 3. 기금지출계획변경안 조정내역

### 가. 감액 :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 소관 | 사업명 | 2026년도 | | | 감액 | 비고 |
|---|---|---|---|---|---|---|
| | | 현계획 | 증감 | 변경안 | | |
| 해양수산부 | | | | | | |
| **합계(총계)** | | | | | | |
| **총지출** | | | | | | |

### 나. 증액

(단위: 백만원)

| 소관 | 사업명 | 2026년도 | | | 증액 | 비고 |
|---|---|---|---|---|---|---|
| | | 현계획 | 증감 | 변경안 | | |
| 해양수산부 | 어선어업 경영자금(융자) | - | - | - | 33,000 | |
| **합계(총계)** | | | | | **33,000** | |
| **총지출** | | | | | **33,000** | |

# Ⅱ. 기 타

1. 부대의견

**국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편성된 목적예비비를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2)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회 본예산 심의 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3)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지원물량을 추가 확대한다.

(4) 정부는 태양광 보급지원 및 융자사업 추진 시 국내산 태양광 모듈(셀)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별 구매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수요에 근거한 필요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지방비 편성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6) 교육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7)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부합하게 편성·집행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8) 산업통상부는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나프타수급안정지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또는 위기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 및 기초유분에 대하여 경제안보품목

또는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수입 물량을 확보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은 보조율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지침 또는 고시를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9)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청년인력 채용 단계에서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선발한다.

(10)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가능한 한 의사(은퇴의사 등 포함)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1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전기차 보조금) 수행과 관련하여, 최근 발표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혜자 선정 평가기준'이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위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회에 보고한다.

(12)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된 정부 차원의 일자리 사업 종료 후 참여자의 민간 취업 연계 현황 및 취업의 질(고용형태·임금수준 등)을 포함한 성과를 분석하여 국회 결산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한다.

(13)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집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

(14)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사업자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 유가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